의안번호	2211684
의 뢰 인	정희용 의원
회 답 일	2025. 9. 25.
추계번호	25B3959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개발 및 복수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4,500만원(연평균 4,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안 제5조)	245	-	-	-	-	245	49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 조약을 준수하고 북극항로 개발 및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이하 "북극항로개발등"이라 함)하여 관련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개발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북극항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극항로 개발 및 복수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6조(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및 복수의 거점항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북극항로개발위원회)	북극항로개발등에 관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제1항)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수 거점항만 지정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개발등과 관련한 관계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북극항로개발등과 관련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개발등과 관련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북극항로개발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극항로개발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5	안 제8조(거점항만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를 통한 국제 해상물류 및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기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1항) 1. 항만의 지정학적 위치 2. 항만의 규모 및 하역능력 3. 선적 화물의 특성 4. 공항・철도 등 교통시설 현황 5. 배후산업의 기능 및 여건 6. 그 밖에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의무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수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제2항) 1.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고,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복수의 항만으로 지정된 거점항만과 관련한 인력・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북극항로개발등 관련 연구개발 등)	정부는 북극항로개발등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정부는 북극항로개발등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개발등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10조(북극해운정보센터)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8	안 제11조(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정부는 북극항로개발등을 위한 항만시설, 물류거점, 해상교통관제 체계, 쇄빙선 운영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북극항로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북극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 및 금융 상품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9	안 제12조(친환경 운항 체계 구축)	정부는 북극 해역의 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북극항로 운항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선박을 개발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극항로 운항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는 북극항로개발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1항) 1. 북극항로개발등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3. 북극항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4. 북극항로개발등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북극항로개발등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4조(국제 협력 강화)	정부는 북극항로의 개발 및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5조(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 유사사례 참고
3	안 제6조(실태조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실태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4	안 제7조(북극항로개발위원회)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현 시점에서는 북극항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제정안의 북극항로개발위원회와 위원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되었는데, 해당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본예산 기준) ·('19)2,574→('20)2,474→('21)2,211→('22)1,492백만원 ·해당 예산은 각종 회의 수당 등 운영비 외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조직 인건비, 정책연구용역비, 국내·외여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표] 위원회 구성 조문 비교

북극항로개발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7조(북극항로개발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해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북극항로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북방경제협력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자료: 제정안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여부</th><th>비고(추계 미실시 사유)</th></tr>
<tr><td>5</td><td>안 제8조(거점항만의 지정 등)</td><td>×</td><td>•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 지정 기준 및 지정절차,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거점항만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제정안에 따라 지정될 거점항만의 수, 비용 지원의 기준 및 수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td></tr>
<tr><td>6</td><td>안 제9조(북극항로개발등 관련 연구개발 등)</td><td>×</td><td>•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북극항로개발등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북극항로개발등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의체 구성, 공동연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해양수산부의 극지활동 진흥 관련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5예산</th></tr>
<tr><td>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td><td>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확보 등 국가적 극지 이슈 대응을 위해 북극해 고위도 연구 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연구선 건조</td><td>7,861</td></tr>
<tr><td>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기술 개발</td><td>극한지 사물 인터넷(IoET), 모바일 플랫폼 기술과 연계하여 극한지 관측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 및 이를 분석,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td><td>2,970</td></tr>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td></tr>
<tr><td>7</td><td>안 제10조(북극해운정보센터)</td><td>×</td><td>•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센터 설치·운영 또는 위탁 대가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여부</th><th>비고(추계 미실시 사유)</th></tr>
<tr><td></td><td></td><td></td><td>나, 제정안은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td></tr>
<tr><td>8</td><td>안 제11조(인프라 구축 지원 등)</td><td>×</td><td>•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개발등을 위한 항만시설, 물류거점, 해상교통관제 체계, 쇄빙선 운영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td></tr>
<tr><td>9</td><td>안 제12조(친환경 운항 체계 구축)</td><td>×</td><td>•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친환경적인 선박 개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극항로 운항 기준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td></tr>
<tr><td>10</td><td>안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td><td>×</td><td>•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북극항로개발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 및 극지활동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5예산</th></tr>
<tr><td>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td><td>해운·항만물류분야 종사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지식 교육 및 인턴십 운영을 통해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지원</td><td>3,652</td></tr>
<tr><td>극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강화</td><td>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13.5)을 계기로 북극해 연안국 및 국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양성, 북극협력주간 개최 등 극지 진출 기반 마련</td><td>785</td></tr>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td></tr>
<tr><td>11</td><td>안 제14조(국제협력 강화)</td><td>×</td><td>•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의 개발 및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여부</th><th>비고(추계 미실시 사유)</th></tr>
<tr><td></td><td></td><td></td><td>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제협력사업의 종류, 내용, 사업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해양수산부의 극지활동 진흥 관련 국제협력 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5예산</th></tr>
<tr><td>극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강화</td><td>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13.5)을 계기로 북극해 연안국 및 국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양성, 북극협력주간 개최 등 극지 진출 기반 마련</td><td>785</td></tr>
<tr><td>북극항로 활성화 협력네트워크 구축</td><td>북극해 연안국 및 주요 해운물류 국가와의 최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 개최 등</td><td>75</td></tr>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td></tr>
<tr><td>12</td><td>안 제15조(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td><td>×</td><td>•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게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 및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재정·신용보증 등의 대상, 내용, 규모 및 세제 지원 내용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td></tr>
<tr><td>13</td><td>안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td><td>×</td><td>•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 업무 위탁 범위 및 대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td></tr>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2017.8.25. 제정(대통령령 제28254호) 이후 2022.10.4. 폐지(대통령령 제32931호)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발 및 복수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4,500만원(연평균 4,900만원)으로 추계

- 추계기간 중 첫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해양수산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과제명	연도	금액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2	200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 수립 연구	2025	290
평 균		245

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검색

[표 3]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45	-	-	-	-	245	49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

[참고자료 1] 극지활동 진흥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25 예산
극지연구소 운영지원(R&D) (일반회계, 1110-301)	기관운영비	기관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 지원	24,420
	주요사업비	극지 인프라 활용을 통한 극지에서의 기초·첨단응용 과학 연구 수행, 3개 남·북극 과학기지·쇄빙연구선 아라온 등 극지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기관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연구·지원 수행	51,475
극지연구소 시설지원(R&D) (일반회계, 1110-304)	시설사업비	청사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시설장비 교체를 통해 기반시설 안정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특수연구시설 및 연구기반설비 성능 개선을 통한 극지연구 수월성 강화 남극장보고기지 중장비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중장비 보관동 신축, 노후화된 필수시설(유류 탱크, 배관 등) 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지원 시설 확장을 위한 컨테이너형(이동, 가변, 확장형) 모듈러 구축	3,612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강화 (일반회계, 2032-302)	극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강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13.5)을 계기로 북극해 연안국 및 국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북극협력주간 개최 등 극지 진출 기반 마련	785
	극지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과학·정책·외교 등 분야별 극지 빅데이터 축적 및 정보공유를 위한 '극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0
	북극항로 및 북방물류 시장 진출 지원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북극 진출 지원을 위한 시장환경 분석 연구 등 추진	127
	북극항로 활성화 협력네트워크 구축	북극해 연안국 및 주요 해운물류 국가와의 최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 개최	75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일반회계, 2042-325)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확보 등 국가적 극지 이슈 대응을 위해 북극해 고위도 연구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연구선 건조	7,861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교통시설 특별회계, 5066-302)	북방물류 교육협력 및 인력양성	북극 진출 우호세력 형성을 위해 북극 원주민 교육 지원	300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25 예산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R&D) (일반회계, 2043-307)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기술 개발	극한지 사물 인터넷(IoET), 모바일 플랫폼 기술과 연계하여 극한지 관측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 및 이를 분석,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2,970

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

[참고자료 2] 해상무역 지원 관련 사업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33개 세부사업에 대해 ('25) 2,940억원 편성

(단위 : 억원)

구분	개요	'25 예산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해운정책과)	친환경선박 개조,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등	358
▪ 연안해운 활성화 (연안해운과)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 여객터미널 운영 등	1,204
▪ 선원인력 양성 및 취업 강화 (선원정책과)	선원 육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역량 강화 등	617
▪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 (항만물류기획과)	항만서비스산업 선진화 지원 등	58
▪ 항만운영 효율화 (항만물류산업과)	친환경 항만서비스 제공 위한 관공선 건조 운영 등	338
▪ 항만안전 및 보안 증진 (항만안전보안과)	안티드론시스템 등 보안시설 확충 등	126
▪ 해운물류 스마트화 (스마트해운물류팀)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촉진 및 기반 구축	240
합 계		2,940